4세대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할인 특별약관(2107)

제1조(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)

① 이 4세대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할인 특별약관(2107)(이하 ‘특별약관’이라 합니다)의 적용 대상은 아래에서 보장 중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상품에 한합니다.

1.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장(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-13조(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) 별표14 및 별표15에서 정한 실손의료비 보장을 말하며, 보험업감독규정 제7-63조(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)에서 정한 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함. 이하 ‘실손의료비보장’이라 합니다)이 부가된 보험계약(이하 ‘실손의료 보험계약’이라 합니다)
2.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「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」에 한함
3. 제1호 및 제2호의 할인 대상 보험료는 예정사업비(계약체결 비용 및 계약관리비용)가 부가된 보장보험료를 대상으로 함

② 이 특별약관의 적용기간은 실손의료비보장의 해당 갱신 보험기간 및 갱신주기로 하며, 차회 이후 갱신시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(단, 제1항의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,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)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 자녀(태아)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일(출생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전환일) 이후 1년까지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(보험료 할인 대상 및 보험료 할인)

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4세대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할인(이하 ‘안정화할인’이라 합니다)은 적용기간 동안 매회 납입되는 실손의료비보장의 보장보험료에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따른 안정화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안정화할인 외에 추가로 적용되고 있는 할인금액과 안정화 할인금액 합계액이 해당 계약 실손의료비보장에 부가된 예정사업비(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예정사업비(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)를 한도로 보험료를 할인합니다.

제3조(준용규정)

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계약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.